

#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사회 규정

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

제정 2021.7.19.

개정 2023.12.15.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(사외이사 또는 비상근이사 포함)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의장)

-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6조 (종류)

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개최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.
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### 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규정 제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는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(2)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(3) 정관의 변경
    - (4) 자본의 감소
    - (5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계속
    - (6) 주식의 소각
    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   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
- (9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2) 현금·주식 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의 보수
- (15)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
2.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과 해임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5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- (6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
3.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

- (1) 자기자본의 10%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,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사항
- (2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(3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5% 이상의 유형자산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항
- (4) 신주의 모집
- (5) 사채 및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6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7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
- (8) 자기자본의 10%이상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(9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, 유가증권의 대여에 관한 사항
- (10) 자기자본의 5%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
- (11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
- (12) 주식매수선택권의 일정범위 내에서의 부여 및 취소
- (1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2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 **제11조 (이사회 내 위원회)**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**제12조 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**제13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**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 **제14조 (의사록)**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상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**제15조(사외이사에 대한 지원)**

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

### **부칙**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